

『구미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「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·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방안」을 반영하여 부패행위 신고 대상자와 신고기한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, 신고 보상금 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부조리 신고대상에 자치단체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포함하고, ‘공무원 등’의 뜻을 세분화하여 명확히 함(안 제2조)
- 부조리 신고기한 폐지(안 제4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공직자윤리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국민권익위원회 「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·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방안」 권고에 따라 현행 조례상 부패행위 신고대상자와 신고기한 등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임.

○ 검토 결과,

- 국민권익위 2019년 1/4분기 통계자료에 따르면 공직자의 부패행위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부패정도가 심한 비위면직자의 경우 공직유관단체의 발생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, 부조리 신고대상자의 범위를 공무원, 출자·출연기관 및 시장이 임원을 선임·임명·위촉하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까지 확대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됨.
- 또한, 부조리 신고기한을 폐지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 발견 시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조리신고 활성화 및 신고 보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.
- 공무원 등의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